

제 230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16.)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준 옥]



# 목 차

|   |                                         |    |
|---|-----------------------------------------|----|
| 1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1  |
| 2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 | 7  |
| 3 |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17 |
| 4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              | 20 |
| 5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 24 |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강철우, 이성복, 변상원, 김향란, 최광열, 이흥희, 권재경, 표주숙, 김종두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정이유

-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아동학대 예방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2조, 제17조 및 제4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4,000천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8. ~ 1. 13.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제정현황(2개소): 경상남도, 사천시

## 5. 검토의견

- 가. 우리 사회가 문명화와 더불어 물질만능 및 개인 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화 됨으로 인해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져 가고 부모 자식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나.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표출하면서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이러한 문제를 법이나 조례로서 다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7.9.19.>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정이유

-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 규정함(안 제3조)
- 나. 주요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용허가와 운영·관리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이용의 제한, 이용료, 이용료 면제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노인복지법」 제37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60백만원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01.~12.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5. 검토의견

- 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견해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항에 따라 둘다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2017년까지 6,644백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합문화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지체, 시각, 농아 등)가 한 건물에 사무소를 두게 되어 한가족이 되었고 또한 주변에 종합병원, 보건소, 삶의 쉼터가 있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사료되며
- 라.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시설들이 증가하므로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부담이 과중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도비 사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마.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장애인복합문화관,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 예산
- 관련 조문: 제1조(목적)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       | 1차년도<br>(2014년) | 2차년도<br>(2015년) | 3차년도<br>(2016년) | 4차년도<br>(2017년) | 5차년도<br>(2018년) | 합계    |
|------|-------|-----------------|-----------------|-----------------|-----------------|-----------------|-------|
| 총 비용 |       | 1,000           | 2,300           | 3,344           | 175             | 60              | 6,879 |
| 세출   | 특교    | 0               | 0               | 600             | 0               | 0               | 600   |
|      | 도비    | 1,000           | 0               | 0               | 0               | 0               | 1,000 |
|      | 군비    | 0               | 2,300           | 2,744           | 175             | 60              | 5,279 |
|      | 소계(a) | 1,000           | 2,300           | 3,344           | 175             | 60              | 6,879 |

###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시설 건립비: 6,644백만원
- 집기 구입비: 175백만원
- 시설 운영비: 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2017.2.8.>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박희순, 이성복, 표주숙, 변상원,  
김종두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정이유**

-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홍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20,25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보건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1. 8. ~ 1. 13.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현황: 없음

(7) 전국 제정현황(31개소) :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등

## 5. 검토의견

가. 사람의 사망 원인이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단순히 노환 등으로 판명 하였으나, 요즘은 환경파괴, 기후 변화, 차량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희귀병과 사고사 등 사망 원인이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

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해 5,200여명인데 반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무려 27,000여명이 넘고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에 해당 된다.

다. 그리고 발생 장소가 집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익히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급성 심정지는 골든타임이라 하는 4분 이내에 응급 조치가 필요하므로 누구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 등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안이유

-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 마. 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제27조)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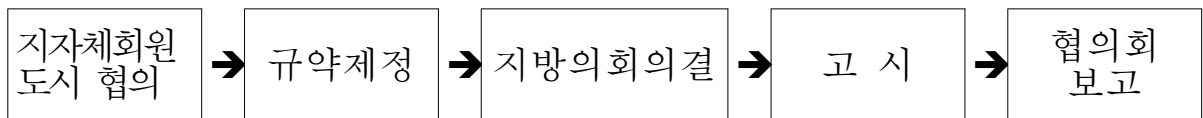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  
▶ 국민권익위 2016.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회의 정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시군별 연간 회비 예산규모: 2,000천원 정도



## 5. 검토의견

- 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 나. 우리군은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2013. 12. 31 조례 제2181호)하고 2014. 10. 30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회원도시로 가입, 동년 12. 3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회원도시로 가입 하였음.
- 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자치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임의협의체 부담금을 납부하여 운영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라. 건강도시협의회는 목적이 타당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 제2절 행정협의회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명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 규약 사본

####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 제99조(회의)

-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0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약칭 KH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①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

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회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운영위원회는 협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 ② 협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都市는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都市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① 부의장都市는 의장都市가 지명한다.

- ② 감사都市는 2개 도시로 두며,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② 의장도시와 부의장都市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 제 6 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 7 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장 재 정

제24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①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회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① 다음 사항은 협회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회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회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②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정회원(89개 도시)

【2017. 12월 기준】

| 시·도명    | 자치단체명                                                                                                            | 비고 |
|---------|------------------------------------------------------------------------------------------------------------------|----|
| 서울 (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 종로구, 강동구, 중랑구, 용산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구, 서초구 |    |
| 부산 (4)  |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    |
| 대구 (1)  | 수성구                                                                                                              |    |
| 인천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    |
| 광주 (3)  | 동구, 서구, 남구, <a href="#">광산구</a>                                                                                  |    |
| 대전 (1)  | 유성구                                                                                                              |    |
| 울산 (1)  | 울산광역시                                                                                                            |    |
|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 (11) |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a href="#">성남시</a>                                       |    |
| 강원 (3)  |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    |
| 충북 (4)  |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    |
| 충남 (7)  |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    |
| 전북 (5)  |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    |
| 전남 (4)  |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    |
| 경북 (9)  |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    |
| 경남 (7)  |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    |
|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                                                                                                          |    |

- **준회원(10개 기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향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안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2016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에 의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을 설치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 사 업 자: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대표: 표재홍)
- 발전용량: 52.36kW
- 사 업 비: 163,500천원(발전소특별회계 전력사업기반기금-국비)

## 나. 추진사항

- 2016.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17.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국비)
- 2017.09.: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허가 통보

## 다. 공작물설치 대상 재산의 표시

| 위 치                           | 건축<br>면적 | 태 양 광<br>설치면적 | 용 량     | 사용허가신청자              |
|-------------------------------|----------|---------------|---------|----------------------|
| 합 계                           | 648㎡     | 383.04<br>㎡   | 52.36kW |                      |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br>(남상면 무촌리 632-2) | 465㎡     | 305.62<br>㎡   | 38.76kW | 남상중앙영농조합법인<br>대표 표재홍 |
| 남상면 복지회관<br>(남상면 무촌리 632-2)   | 183㎡     | 77.42㎡        | 13.60kW | "                    |

## 라.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연간 사용료: 1,457,290원(부가세 포함)
    - ※ 산출내역: 재산평가액(공시지가×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50/100×1.1(부가세)
  - 철거(원상복구)비용: 7,335,000원(보증보험 보증서 징구)
    - ※ 산출내역: 태양광설치 52.36kW 철거공사 설계비 산출

## 마. 연간 예상발전 수익 및 용도

- 연간 예상발전 수익: 13,409천원

| 구 분   | 인증서 판매분(한전)                               | SMP 판매분(전력거래소)                     | 비 고 |
|-------|-------------------------------------------|------------------------------------|-----|
| 산 출 액 | 8,620천원                                   | 4,789천원                            |     |
| 산출근거  | 설 치 용 량×일 평 균 발 전 시 간<br>×365일×가중치×인증서 가격 | 설 치 용 량×일 평 균 발 전 시 간<br>×365일×SMP |     |
| 산출산식  | 52.36kW×3.58×365일<br>×1.2×105원            | 52.36kW×3.58×365일×70원              |     |

- ※ SMP: 생산량만큼 kW당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가격
- 수익금 사용: 남상면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체육대회 행사 시 지원 등)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 나. 위치도 및 현황사진(남상면 무촌리 632-2)



## 5. 검토의견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 조항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2항에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같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다. 지방의회가 동의에 대한 심의를 할 사항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2016. 10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2017.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국비)을 교부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2017. 6. 12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되었음.
- 마.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당초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의회 동의를 얻은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